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교복나눔운동 사업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교복나눔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마.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 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함(안 제5조)

바.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ssg10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사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 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2.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